

## ◎ 선수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 2022. 8. 17.

**제 1 조(설치근거 및 명칭)**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 규약 제31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, 그 명칭은 선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**제 2 조(목적)** 위원회는 선수의 권익을 보호, 증진하여 건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을 통해 존경받는 체육인상을 확립함으로써 장애인스포츠 정신의 보급·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3 조(적용범위)** 본회에 정가맹된 종목별 경기단체(이하 “경기단체”라 한다)에 등록된 선수에 적용한다.

**제 4 조(기능)**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 한다.

1.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및 각종 대회 관련,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 및 장애인 스포츠 정신의 보급·확산
2. 장애인스포츠기구 선수위원회의 교류 및 협조에 관한 사항
3. 선수의 권익 보호, 증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
4. 선수등록 및 경기분야 제도개선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
5. 선수활동에 관한 제반사항 및 조정에 관한 사항
6. 은퇴선수 프로그램 개발 등 은퇴선수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
7. 기타 위원회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항
8. 위 각 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

**제 5 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위원장 1인
2. 부위원장 1~3인
3. 위원은 본회에 정가맹된 경기단체별 선수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.

② 위원회 위원은 정기등록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로 위원 선임년도 기준 각 경기단체에 2년 이상 연속 선수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한다.

③ 위원회에는 본회 직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둔다.

**제 6 조(상임위원회 설치)**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, 상임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 안건을 심사 결정한다.

② 상임위원회는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위원장 1인(선수위원장)
2. 위원 4인(선수위원 중 선수위원장 추천 2인, 위원 추천 2인)
- ③ 상임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④ 상임위원회의 결정 시에는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.

**제 7 조(위원의 위촉)** ① 위원은 경기단체에서 선출된 자로 위촉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.

- ② 위원장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-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하며, 부위원장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선임 순서를 정하여야 한다.

**제 8 조(위원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**제 9 조(임기)**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,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경기단체의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

-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10조(위원의 해촉)**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2.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4. 위원으로 선임된 기간 동안 선수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
5. 해당종목에서 직위를 잃었을 경우

**제11조(회의소집)** ① 위원장은 본회의 요구 또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.

- ② 위원회는 정기위원회를 1년에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의결정족수)**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13조(제척 및 회피)** 위원은 본인,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**제14조(선수위원회 설치 의무)** ① 경기단체 및 시·군장애인체육회는 선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경기단체 및 시·군장애인체육회의 선수위원회 규정은 이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단체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되 본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경기단체 및 시·군장애인체육회의 선수위원회는 해당 단체의 등록선수 자질 향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사무국 설치)** ① 위원회는 제4조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,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

②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,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**제16조(자문위원)** ① 선수위원회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② 자문위원의 역할은 별도로 정한다.

## 부 칙

**제 1 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제 2 조(경과조치)**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